

|        |              |
|--------|--------------|
| 의안번호   | 2207797      |
| 의 퇴 인  | 김선교의원        |
| 회 답 일  | 2025. 4. 23. |
| 추 계 번호 | 25B0598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 제2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1)의 공급망 위협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2항)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및 공급망안정화 조치) 제2항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공급망 위협으로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등의 원활한 국내 유입·유통에 필요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상 조치 실시(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협으

1)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sup>2)</sup>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begin{aligned} \text{농어업경영체} &= \text{농업경영체} + \text{어업경영체} \\ &= (\text{농업인} + \text{농업법인}) + (\text{어업인} + \text{어업법인}) \end{aligned}$$

- 개정안에 따라 공급망안정화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경영체 현황,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원재료 등의 종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의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나, 향후 발생할 공급망 위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경영체 및 지원이 필요한 품목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원 필요 품목 등의 원활한 국내 유입·유통을 위해 취해질 공급망안정화법상 조치 내용 역시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들에 대하여 공급망안정화법이 정하는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음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 경제안보품목 등 지정, 선도사업자 선정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주요 조치 현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표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농어업경영체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부사업명                                 | 주요내용                                                                    | 2022    | 2023    | 2024    | 2025    |
|-------------|---------------------------------------|-------------------------------------------------------------------------|---------|---------|---------|---------|
| 농림축산<br>식품부 | 무기질비료<br>가격보조 및<br>수급안정<br>(2260-377) |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br>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br>경영부담 경감을 위해<br>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180,099 | 100,000 | 28,815  | -       |
|             | 농가사료<br>직거래활성화<br>지원<br>(3733-329)    | 축산농가에 저리<br>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br>* 대출금리 1.8% 또는<br>변동, 1년 이내 상환              | 355,000 | 355,000 | 300,000 | 300,000 |
|             | 사료산업<br>종합지원<br>(3733-312)            | 국제 곡물가격, 해상운임,<br>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br>따른 사료제조업체의<br>원료구매 부담완화를 위한<br>융자 지원 | 62,749  | 62,749  | 89,000  | 100,000 |
|             | 농업자금<br>이차보전<br>(1038-301)            | 무기질비료생산업체의 원료<br>확보자금을 저리로 지원<br>* 대출금리 3.0% 또는<br>변동, 1년 이내 상환         | 8,214   | 12,698  | 11,127  | 8,002   |
|             |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br>저리로 지원<br>* 대출금리 1.0%,<br>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0,878  | 34,694  | 31,730  | 34,163  |
|             |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을<br>저리로 지원<br>* 대출금리 1.8%,<br>2년 이내 상환                     | -       | 14,384  | 20,834  | 31,335  |
|             | 합 계                                   |                                                                         | 616,940 | 579,525 | 481,506 | 473,500 |
| 해양<br>수산부   | 양식어업<br>지원(융자)<br>(3465-301)          | 배합사료 및 어분 공장<br>운영비 융자 지원                                               | 2,240   | 2,240   | 2,240   | 2,240   |
|             | 합 계                                   |                                                                         | 2,240   | 2,240   | 2,240   | 2,24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경제비용추계과 | 최동완 | 김신애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최동완 | 02-6788-3746 | dongwaniii@nabo.go.kr |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주요 조치 현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취지

-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 경과

- 2023. 12. 8. 국회 본회의 통과, 2024. 6. 27.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주요 조치 현황

| 부처          | 조치 내용           | 조치 설명                                                                     | 근거 조문  |
|-------------|-----------------|---------------------------------------------------------------------------|--------|
| 농림축산<br>식품부 |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수립  | '25년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법 제8조  |
|             |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지정 및 관리                                       | 법 제13조 |
|             | 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도사업자로 선정 | 법 제19조 |
|             |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공비축  | 밀, 콩 국내산 공공비축 시행                                                          | 법 제25조 |
| 해양수산부       |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수립  | '25년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법 제8조  |
|             | 경제안보품목 지정 및 관리  | 해양수산부 소관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지정 및 관리                                         | 법 제13조 |
|             |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품목별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운영          | 법 제15조 |
|             | 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   | 해양수산부 소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선도사업자로 선정   | 법 제19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출자료